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[별표1], [별표3], [별표4]"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, 충북예술고등학교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